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5 선고 2017가단10509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6. 4.

판결 선고2018. 6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4,333,095원과 그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6. 1. 13.부터 2018. 2. 22.까지는 연 5%의, 64,333,095원에 대하여 2018. 2. 15.부터 2018. 5. 30.까지는 연 5%의,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심병직

별지